

## 비인도적 탈북자 강제송환과 국제법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12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원용되고 있다. 필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이 두 협약을 근거로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를 주장해야 한는데 뜻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이외에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제법적 근거는 없을까? 특히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비인도적’ 처사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할 때 직접 원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협약 및 관련 사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습법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 제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은 중국이 가입하고 있지 않다. 조약은 원칙적으로 가입하거나 비준한 당사국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되거나 추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규정과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3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마찬가지로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일정한 경우에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7년에 D.사건을 다루었다. D.는 에이즈환자로 영국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범죄로 인해 추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D.가 에이즈환자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영국정부가 D.의 치료를 위한 책임을 부담해왔다는 점, D.가 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의료시설 박탈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사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D.를 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대우로서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2001년에 판결한 Bensaid사건도 D.사건과 비슷하게 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의 추방이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가와 관련된 사안이다. 알제리 국민 Bensaid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나 1997년 영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Bensaid의 추방이 비인도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ensaid가 영국에서 받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추방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국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에서 받은 치료보다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될 상황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Bensaid사건이 D.사건과 다른 점은 D.의 경우에는 추방을 당하게 되면 치료도 받을 수 없고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반면에 Bensaid의 경우에는 추방을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치료는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들은 심각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추방을 비인도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D.사건과 같이 심각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추방은 비인도적인 행위에 해당됨을 말해준다. D.의 경우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제송환을 앞둔 재중 탈북자들이 처한 상황은 D.가 처해있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의 경우 강제송환되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민보안부 소속의 보안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보위부원들, 집결소와 구류장 및 교화소의 지도원과 계호(우리의 교도관에 해당)들에 의해 말로 다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당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대개 집결소와 구류장에서 수사와 예심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집결소와 구류장, 교화소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혹행위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고 각종 구금시설의 열악한 영양의료 상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집결소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 청진도 집결소에서 동료 구금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 1월 3일 신의주 집결소에서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는데 시체를 이불에 싸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의사 보안원이 이튿날 부검하고 시신을 땅에 매장하였다고 증언하였

다. 구류장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은 2009년 1월 양강도 김형직군 보안서 구류장 수감시 영양 실조로 인한 사망 직전의 사람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은 함경북도 회령시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 중이던 2009년 12월 동료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밖에도 탈북을 기도하다가 체포된 경우 또는 탈북을 하였더라도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한다. 회령시 동명동에 거주하던 ○○○은 탈북 후 중국에 있는 남한 대사관에 들어가려다 체포되어 2010년 강제송환되었고 2011년에 정치범수용소 가운데 하나인 회령 22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간혹 송환되더라도 조사만 받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요컨대, 탈북자들을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북한으로 송환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비인도적 행위에 해당한다.